

구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커 기울이는 금천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2021. 9. 7.(화) 10:00

제230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심사안건

검 토 보 고 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교통건설국 소관)



복지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추병수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 보고

1. 제안경위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따라 2021년 8월 24일 구청장으로부터 접수되어 8월 24일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음.

2. 관련근거

- 지방자치법 제130조(추가경정예산)
- 지방재정법 제45조(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

3. 추경예산안 편성규모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총괄)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최종예산 641,667,291천원(일반 630,251,174천원 특별 11,416,117천원)

(단위 : 백만원)

구분	예산액	기정액				2회추경(안)	비고
		소계	당초예산	간주처리	1차추경		
계	641,668	590,202	545,733	32,053	12,416	51,466	
일반회계	630,251	576,127	532,501	31,210	12,416	54,124	
특별회계	11,417	14,075	13,232	843	0	-2,658	
의료급여기금	581	504	504		-	77	
주민소득지원및 생활안정기금	642	294	294		-	348	
주차장	10,194	13,277	12,434	843	-	-3,083	

4. 교통건설국 부서별 추경예산안

○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현황

(단위:천 원)

세부사업명	주요내용	최종예산 (①+②)	가정액 (①)	제2회추경(안) (②)
일반회계		20,323,465	16,656,974	3,666,491
교통행정과				
교통시설물 유지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요내용 - 무단횡단방지시설 신설 - 교통시설물 유지보수 비용 	335,509	219,737	115,772
가산디지털단지역 출입구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요내용 - 가산디지털단지역 출입구 신설에 따른 우리구 분담금 ⇒ 실시설계에 따른 사업비 증가 	443,002	0	443,002
교통수요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요내용 - 노상공영 나눔카 주차면 설치 ⇒ 사업완료에 따른 잔액 발생 	110,249	111,057	-808
건설행정과				
손실보상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요내용 - 손실보상에 따른 등기촉탁수수료 ⇒ 손실보상이 적게 발생해 잔액 감액 	3,602	4,457	-855
도로과				
도로계획 및 개설사업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요내용 - 장기미집행 대상 토지보상비 ⇒ 토지수용재결위원회 결정에 따른 보상비 증액 	1,015,060	515,060	500,000
관내 도로보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요내용 - 도로정비공사(연간단가) : 아스팔트 포장 ⇒ 주민불편신고 지속 접수로 대상지 추가 	2,838,296	2,638,296	200,000
신속한 제설대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요내용 - 제설대책 근무자 급량비 - 제설전진기지 도로환경정비사업 - 도로열선(융설시스템) 설치 	2,660,521	242,721	2,417,800
가로등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요내용 - 2021년 가로등 전기설비점검결과에 따른 정비 	896,287	851,287	45,000
치수과				
빛물펌프장 시설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요내용 - 가산2빛물펌프장 유수지 물막이판 설치 	200,000	150,000	50,000

세 부 사업 명	주 요 내 용	최종예산 (①+②)	기정액 (①)	제2회추경(안) ②
안양천 하천시설물 유지관리	◦ 주요내용 - 안양천 제방 산책로 벤치 설치 - 족구장 인조잔디 및 조명설치 - 태양광 패널 철거 및 설치	456,390	397,390	59,000
안양천 물놀이 시설 유지관리	◦ 주요내용 - 안양천 어린이 물놀이장 개장에 따른 유지관리 ⇒ 코로나19로 개장 취소	17,338	169,778	-152,440

○ 특별회계 세출예산 편성현황

(단위:천 원)

연번	부서명	세 부 사업 명	최종예산 (A+B)	기정액 (A)	2차추경(안) (B)
계			10,193,589	13,277,025	-3,083,436
1	주 관 리 차 과	공영주차장 건설	4,301,140	7,370,015	-3,068,875
2		행정 운영경비	1,318,856	1,355,656	-36,800
3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 등	114,137	91,898	22,239

5. 검토의견

○ 교통건설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 기정액(166억 5,690만원)에서 36억 6,640만원이 증액되어,

203억 2,34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구 전체 예산 총액 대비 3.22%에 해당됨.

○ 부서별 주요 예산편성 현황을 보면,

가. 교통행정과

기정액(9억 914만원)에서 금회 5억 5,900만원을 증액 편성

주요 편성 내용으로

교통시설물 유지관리 1억 1,570만원이 증액
가산디지털단지역 출입구 신설 4억 4,400만원 증액 편성

나. 건설행정과

기정예산(48억 4,600만원)에서 금회 1,270만원 감액 편성

다. 도로과

기정액(72억 1,100만원)에서 금회 31억 6,700만원 증액 편성

주요 편성 내용으로

도로계획 및 개설사업으로 토지 보상비 5억원 증액

관내 도로보수 2억원 증액

제설대책 24억 1,700만원 증액

가로등 관리 4,500만원 증액 편성

라. 치수과

기정액(36억 9,000만원)에서 금회 4,720만원 감액 편성

주요 편성 내용으로

빗물펌프장 시설 개선 5,000만원 증액

안양천물놀이시설 관리 1억 5,200만원 감액 편성

○ 주차장 특별회계 추가경정은

기정액 132억 7,700만원에서 30억 8,300만원이 감액되어

101억 9,350만원이 편성됨

주요 편성 내용으로

공영주차장 토지매입비 30억 6,880만원이 순세계잉여금 축소에 따라 감액

주차관리과 행정운영 경비 3,680만원 감액

보조금 반환금 2,220만원 증액 편성

○ 교통건설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구민의 안전과 생활편의를 위한 사업 및 기반 시설의 지속적인 유지

관리를 위한 추가 소요 예산과 2020년도 국·시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등 필수 경비 등을 세입 재원 한도 내에서 적정하게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며 소관부서에서는 신속하고 내실 있는 예산 집행으로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시행 2019. 12. 25.] [법률 제16057호, 2018. 12. 24., 타법개정]

제130조 (추가경정예산)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변경 할 필요가 있으면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 ② 제1항에 관하여는 제127조제3항과 제4항을 준용한다.

『지방재정법』

[시행 2021. 1. 1.] [법률 제16855호, 2019. 12. 31., 타법개정]

제45조 (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 예산(追加更正豫算)을 편성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전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같은 회계연도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1. 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
2. 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재난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복구계획이 확정·통보된 경우 그 소요 경비

[전문개정 2011.8.4.]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 2020. 1. 1.] [법률 제16856호, 2019. 12. 31., 일부개정]

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범위에서 세부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안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부분에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5. 7. 24.>

1. 예측할 수 없는 소요가 발생한 경우
2. 긴급한 소요가 발생한 경우
3. 기존사업을 보완하는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 7. 24.>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
2. 「재해구호법」 제14조에 따른 재해구호기금

③ 제1항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기금의 결산 보고서에 그 내용과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5. 30.]